##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0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김선교·구자근·김상훈

김성원 · 김위상 · 이헌승

서일준 · 최수진 · 서지영

박수민 · 최보윤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, 적합성,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,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,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.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·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'한국치산기술협회'가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

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3항 중 "할"을 "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	제9조(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		
등) ① · ② (생 략)	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	③		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항에			
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			
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			
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			
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			
평가하게 <u>할</u> 수 있다.	<u>하거나 대통령령으</u>		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에		
	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		
	<u>할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④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		
	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3항에		
	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		
	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		
	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		
	비를 지원할 수 있다.		
<u>④</u> · <u>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		
	과 같음)		